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7. 3. 6.  
사회건설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2월 16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2월 22일

라. 상정일자 :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3. 3.)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국장 김종호)

가. 제안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 (안 제명)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6조의2)

다. 상위법령 중복 조항 삭제(안 제3조제2항, 안 제4조의2, 안 제6조의3)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
  -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사항이 소위원회 심의내용으로 추가함.
  - 상위법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기피·회피 사항 등의 조항을 삭제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정비·보완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96 호
----------	---------

제출연월일 : 2017.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정비(안 제명)
- 나. 상위법령에 규정된 중복 조문 삭제  
(안 제3조제2항, 안 제4조의 2, 안 제6조의 3)
-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항목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6조의 2)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3)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6.12.22. ~ 2017.1.11. / 20일간) 결과: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위촉 및 위촉 해제)”를 “(위원의 위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의2 중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가격”을 “표준지공시지가와 인근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 인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으로 한다.

제6조의3을 삭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1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한다.

제21조의3 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u>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부동산평가위원회</u>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부동산평가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③ (생략)</p> <p>제3조(<u>위원위촉 및 위촉 해제</u>) ① (생략)</p> <p>② <u>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u></p> <p>1. <u>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p> <p>2. <u>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연</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u>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u>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u>」 제25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74조</u>-----</p> <p>-----<u>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u>-----</p> <p>-----.</p> <p>제2조(구성) ① ----- <u>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u>-----</p> <p>-----</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u>위원의 위촉</u>)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3회 이상 연속)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4.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의2(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표준지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의견제시

6.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삭 제〉

제 6 조 의 2 ( 소 위 원 회 ) -----

-----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부동산가격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

-----  
----- 표준지공시지가와 인근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과 인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

〈삭 제〉



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  
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  
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  
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  
여야 한다.